

2017. 3.24.(금) ~
3.31.(금) / 8일 간

제28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목 차

1.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3
2.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3.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5
4. 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장성 소방서 신설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10
9.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

심사결과

의안명	의결결과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 소방서 신설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안	원안가결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주요내용

1.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17. 2. 27.
- 발 의 자 : 차상현, 고재진 의원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외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제정
- 주요내용
 -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천만원 이상인 재산
 -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2차 본회의 / 2017. 3. 31.)
 - 조례안 제2조 제2항 나목에 내용 추가 수정하여 의결함.
 - 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의결사항)(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제5조(지원대상 사업)(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 당초 1만 제곱미터 미만이 있더라도 동종사업으로 추 가하여 총 면적이 1만 제곱 미터 이상이면 의결을 받 아야 한다.

2.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발의일자 : 2017. 3. 16.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SNS를 활용한 군정 이해와 주민 참여를 높이고자 함.
 - SNS를 활용한 각종 행사와 이벤트 시 참여자에게 경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식 SNS 계정 개설 및 게시물의 유지·관리 (안 제3조 ~ 제4조)
 - SNS에 게재할 사항과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게시물 삭제·차단 가능

- 각종 행사의 운영(안 제5조)
 - SNS를 이용한 이벤트에 참여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제공 가능
- SNS 서포터즈의 운영·역할·위촉해제 (안 제7조 ~ 제9조)
 - 위촉기간 1년, 연임 가능
- 원고료 지급 등 예산의 지원(안 제10조)
 - 취재 원고에 대한 필요경비와 원고료 지급 및 교육, 연수 등 예산지원
- SNS 운영의 위탁 및 포상(안 제11조 ~ 안 제12조)
 -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에게 위탁 가능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7. 3. 31.)

3.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 발의일자 : 2017. 3. 16.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률이 변경되고 규정이 전부 개정됨으로써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5조)
 -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안 제6조 ~ 제11조)
 -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21조)
 - 양성평등정책의 참여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제35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6조 ~ 제39조)
 - 여성친화 군민참여단에 관한 사항(안 제40조 ~ 제47조)

▪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7. 3. 31.)

4. 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7. 3. 16.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영유아 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 규정과 불일치하는 조례의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의무 규정 반영(안 제2조)

- (현행)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개정)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12조)

○ 보육시설 위탁 계약기간 변경(안 제6조제3항)

- (현행) 3년

- (개정) 5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 법령 근거 없는 의무 조항 삭제(안 제7조제5항, 제6항)

- (현행)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5항)

“~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6항)

- (개정) 삭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4항, 제5항)

○ 위탁 취소 사유 개정(안 제8조)

- (현행) “군수는 ~ 때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개정) “군수는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려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비용 및 보조금의 환수 사유 개정(안 제11조)

- (현행) “군수는 ~ 때 환수할 수 있다.”

- (개정)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7. 3. 31.)

5.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7. 3. 16.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난해 옐로우시티 조성사업의 본격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옐로우시티 프로젝트팀)을 운영해 왔으나,

○ 옐로우시티 조성사업이 개별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사업부서인 현부서에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총괄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총괄(컨트롤타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하여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팀(담당)이관

- 옐로우시티 프로젝트팀 : 경관도시과 → 기획감사실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사·군·구의 기구설치기준)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7. 3. 31.)

6.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7. 3. 16.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및 국가정책·지역현안사업 등으로 확보된 기준인력에 대한 순증정원을 반영하고,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조정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 : 585→595(+10명)

구분	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비 고
당초	585명	573명	12명	
변경	595명	583명	12명	
증감	+10명	+10명	-	

- 직급별 정원표 : 6급 +2명, 7급 +1명, 9급 +7명,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
 - 사회복지 확충인력(행자부승인) : 9급 +3명
 - 국가정책, 지역현안사업 확충인력(행자부승인) : 7급 +1명, 9급 +6명
 - 가족방역(1), 지적재조사(1), 관제센터(1), 도서관 관리(2), 수영장(1), 청소년수련관(1)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조정 : 6급 +2명, 9급 △2명
 -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및 제24조(정원의 관리), 제30조(정원의 규정)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자부)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7. 3. 31.)

7.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7. 3. 16.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목적 조항 등을 신설하고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로 정함
- 영천리 매화2동 나빌레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유입에 따라 기존 행정리를 현지 실정에 맞게 분동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조항 등을 신설하고,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에 정함
- 장성군 이장 정원 : 291명 ⇒ 292명으로 조정(1명 증)
 - 장성읍 영천리 이장 정원 : 18명 ⇒ 19명으로 조정(1명 증)

읍면	리명	정원 조정			조정내용
		현행	개정	증감	
총 계		291	292	1	장성읍 영천리 매화2동 ⇒ 매화2동, 매화4동으로 분동
장성읍	영천리	18	19	1	

※ 매화4동(나빌레 아파트 101동~103동, 장성읍 영천리 1661번지 일원)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7. 3. 31.)

8. 장성소방서 신설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발의일자 : 2017. 3. 16.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성소방서 신설에 따른 군계획시설(공공, 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의 구역 설정을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

▪ 주요내용

- 대 상 : 장성 소방서 신설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66-8번지 일원
- 면 적 : 9,743㎡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0	공공 청사	소방서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66-8번지 일원	-	증)9,743	9,743	-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0	공공청사 (소방서)	◦ 신설 ◦ 면적 : 9,743㎡ ◦ 위치 :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66-8번지 일원	◦ 소방서 설치를 위한 공공청사 결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7. 3. 31.)

9.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7. 3. 16.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근거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불일치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 주요내용

-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로 근거법 변경
- 제4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발급한다.
- 제8조 제1항 제4호를 “사용료를 2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에서 “사용료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써 독촉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로 변경
-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 ②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시장사용허가증 허가조건 1호 라목을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에서 “사용료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써 독촉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로 변경

▪ 법적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7. 3. 31.)

10.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17. 3. 16.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성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를 장려하고 로컬푸드 관련 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심의위원회에서 기능 대행
 -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비 지원(안 제11조)
 -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사업비 지원(안 제12조)
 -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장 및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의 개설, 운영 및 지원(안 제14조제1항)
 - 전문판매장의 활성화 지원(안 제14조 제2항)
 - 전문판매장 개설관리 지원(안 제14조 제3항)
 - 로컬푸드 식재료·음식판매점 설치 시 사업비 지원(안 제15조 제2항)
- 법적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2차 본회의 / 2017. 3. 31.)
 - 조례안 제15조 제2항 삭제하여 의결함.

수정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로컬푸드식재료·음식 판매점 지정 및 지원) ①(생략) ② 군수는 음식판매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로컬푸드식재료·음식 판매점 지정 및 지원) ①(생략) ② 삭제

11.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7. 3. 16.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역민 이용률 증가와 기숙사 확대 등 급식용 상수도 급증으로 인해 학교 수도요금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교육공동체 형성과 농어촌교육발전 도모를 위해 학교의 수도 사용료를 일부 감면(30%)하고자 함.
 - 또한, 근거 법 및 사회여건 변화 등에 따라 현 여건에 맞춰 불필요한 조항을 없애고 불합리한 조문 문구를 보완함.
- 주요내용
 -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문구 변경
 - 제21조 제3항을 삭제
 - * 주민의 권리나 재산권에 반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할 시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제21조 제3항은 법률 근거가 없음
 - 제2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문구 변경
 -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문구 변경
 - 제35조 제2항 제3호를 제4호로 변경,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
 - ③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는 수도 사용료의 30%
 - 제41조 제3항을 삭제

* 제41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철폐한 급수설비(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설비)는 설치한 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41조 제3항은 법률 근거가 없음

■ 법적근거

○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7. 3. 31.)

12.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발의일자 : 2017. 3. 16.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본예산 이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 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그리고 농업·농촌 생산기반 시설 구축과 상하수도 확충 및 나노산단 기반조성, 재난안전 대응시설을 비롯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

■ 주요내용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620억 8백만원으로

기정액 3,501억 7천 9백만원 보다 118억 2천 9백만원이 증액.

○ 그 중 일반회계는 3,478억 8천 9백만원으로 118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41억 1천 9백만원으로 5천 4백만원이 감액 됨.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362,008	350,179	11,829	3.38%	
일 반 회 계	347,889	336,006	11,883	3.54	
특 별 회 계	14,119	14,173	△54	△0.38	
의 료 급 여 사 업	1,166	1,182	△16	△1.36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2,188	2,188	0	0	
주차장 운영	1,117	1,155	△38	△3.28	
공영터미널운영 및 관리	151	151	0	0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66	66	0	0	
드림빌	2,788	2,788	0	0	
건축진흥	135	135	0	0	
주민소득지원 기금	1,136	1,136	0	0	
상수도사업	5,372	5,372	0	0	

■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2차 본회의 / 2017. 3. 31.), 별첨 참조

별첨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 세 입 : 362,008,589천원

가. 삭 감 : 해당없음

나. 증 액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362,008,589	-	-	-	362,008,589
일반회계	347,889,493	-	-	-	347,889,493
특별회계	14,119,096	-	-	-	14,119,096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2. 세 출 : 362,008,589천원

가. 삭 감

1) 일반회계 : 1,905,000천원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증 액

1) 일반회계 : 1,905,000천원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출			인 정 액
		삭 감 액	증 액	순삭감액	
계	362,008,589	1,905,000	1,905,0000	0	362,008,589
일반회계	347,889,493	1,905,000	1,905,000	0	347,889,493
특별회계	14,119,096	0	0	0	14,119,096